

## 제8회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 결과

-- 치안연구소 운영계 --

- 日 時 : 10. 19(火), 10:00~18:40
- 場 所 :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(20층)
- 참석인원 : 총 3700여명

### < 분 류 >

- 경찰관계자 : 경찰청 서울지방청 및 경찰서 과 계장 등 80명  
수사보안연수소 200명
- 학 계 : 40명
- 일반대학 경찰학과 학생 등 : 50명

### □ 세미나 분위기

- 청중들의 자세가 진지하고
- 발표 토론자들이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음

### □ 세미나 진행

【제1주제 : 경찰관의 의식행태 변화를 통한  
경찰조직문화의 선진화 방안】

- 발표요지

### 이 상 안 경찰대 교수

경찰윤리문화창달을 유인지 위한 제도  
화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에 윤리평가위원  
회를 두고 총경이상 관리자의 직무윤리  
성에 관한 직무를 담당 등

○ 토론내용

서 경 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집행위원장

- 현실에 맞는 제도개혁을 시행해야 함
- 의식개혁 방식 전환 필요(혁명적 의식 개혁, 교육방식 개선)
- 경찰은 法治를 세우는 파수꾼(부정부패는 경찰이 대안 마련해야)
- 문제해결능력 갖춘 경찰(재량권 부여 필요)
- 경찰관 출신의 시민운동 필요

이 중 수 연세대 교수

- 21C 경찰문화모형(4각 모형 : 민주, 윤리, 전문, 신뢰성)의 상위개념으로 '공공 책임성' 추가필요
- 교육 행정개혁은 관리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함

정 갑 영 한국문화정책개발 연구원 수석연구원

- 주변환경을 고려한 경찰조직문화 형성 필요
- 경찰관의 문화생활을 위한 조직차원의 배려 필요
- 경찰청사 등 획일적인 형태 개선
- 시민단체에 경찰관의 참여, 경찰지식 노하우 활용
- 경찰활동 지역사회 대국민 홍보 활성화

【제2주제 : 피의자 구속기간 단축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】

○ 발표요지

백 형 조 원광대 석좌교수

- 사개위 1차시안은 구속기간연장,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제도, 즉결 심판에 대하여 검사의 권한만 강화된 것임

○ 토론내용

손 동 권 건국대 교수

- 사법개혁위원회에 개혁대상인 판 검사, 변호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모순이므로 결정권자로서 시민대표 교수 등을 충원하고 주도해야 한다. 다만, 각 부서의 입장은 공청회 등을 통해 실무 의견을 개진하는데 한정해야 한다.
- 구속기간 단축이 인권보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실질심사제 등 제도적인 문제와 판 검사, 변호사 등의 법조 부조리, 권위의식, 행태변화, 사법기관 재량남용시 처벌문제 거론 등을 검토해야 된다.
- 구속기간을 5일로 단축하는 것은 경찰의 구속을 무의미하게 함으로 차라리 체포해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낫다. 따라서, 경 검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통합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

이 기 호 경찰대 교수

- 사개위에서 구속기간 단축문제를 논의할 때 실무상의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지 의문이다.

- 장기적으로는 구속기간을 최소화해야 하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와 경찰의 구속기간을 통합하여 수시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.
- 구속기간을 5일로 단축시 경찰에서 범죄혐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해 강압적인 수사관행이 되살아날 우려

천진호 경북대 교수

- 피의자, 피해자 인권은 대립 충돌개념이 아니라 상호보완적
- 구속기간 장 단에 따라 범죄예방이 곤란하다는 논리는 비약이다.
- 사법개혁은 인신구속문제도 중요하나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
- 검찰의 정치적 중립, 법관양성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더욱 중요
- 검사의 5일간의 수사기간 연장허가권은 헌법 제13조에 위반(구속기간 연장은 헌법 규정)하며 검사청구가 아닌 검사재량으로 허가권을 행사함은 있을 수 없음
- 수사기관간 현행과 같이 할당량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중의 고통을 줌

**【제3주제 : 청문관제도의 조기정착 및 향후 운용방안】**

○ 발표요지

문성호 박사

- 민원에 따라서 “청문검사관실과 민원봉사실” 또는 “청문감사실과 수사과” 통합필요
- 시민에 참여하는 경찰비리조사위원회를 구성할 필요

\* 외국의 예 : 뉴욕경찰의 경찰비리심사위원회(CCRB), 런던경찰청의 경찰 비리조사처(PCA)

○ 토론내용

이관희 경찰대 교수

- 청문감사관제도는 주민과 가까이 하기 위한 경찰의 몸짓
- 영국 미국의 경찰관련 민간기구는 장기과제로 검토 가능
- 경찰관련 민간위원회와 향후 자치경찰 도입시 경찰위원회와 관계 설정 필요
- 청문관 제도는 반드시 존속되어야 함 (민원실 기능의 청문관이관, 근무여건 조성)

신대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, 행정개혁 시민연합 사무총장

- 청문감사관 제도가 현상황으로 볼 때 없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나 살려나가야 함
- 경찰수뇌부의 의지와 상급기관에 관할 기구를 설치하여 활동의 독자성 확보 및 외부 시민단체의 압력을 방치할 수 있어야 함

민 감 룡 경찰청기획단, 경정

- 청문감사관제도는 민원인에 대한 A/S 센터임(고객지원센터)
-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조치가 청문관 제도 성공의 관건임
- 청문감사관의 성공을 위해 인사상 우대, 청문실적의 공정평가, 외근활동비 지급 등 필요

【제4주제 : 주택가 방법활동의 효율화 방안】

○ 발표요지

김 형 청 용인대 교수

- 각 부처의 범죄예방정책을 지원·조정 하는 범죄예방위원회(가칭) 설립
- ‘범죄없는 하루’ 제도의 도입, ‘범죄신문의 발간’ 등 필요

○ 토론내용

조 병 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, 형사  
사법제도연구팀장

- 범죄신고율을 높이는 방안 강구 필요
- 암수범죄의 심각성 인식
- 범죄신고보상금 제도 홍보
- 보복에 대한 우려 : 신고자 보호조치 확대(익명 또는 가명 신고자도 적용)
- 하이테크범죄의 피해신고 장소도 가정이나 사무실일 수 밖에 없으므로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이 출동, 사건해결을

하기위해 「하이테크범죄 전담센터」 등을 가동할 필요

정 영 일 경희대 교수

- 시민의식속에는 아직 경찰을 경원시 되고 있으므로 시민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 모색 필요
- 방법 업무수행시 효율성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침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자 배려 필요

임 준 태 경찰대 교관, 경희대 겸임교수

- 경찰의 임무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과 진압인데 이를 위해 범죄인에 대한 체포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 필요
- 경찰의 전문화와 교육의 질 제고와 필요
- 경찰교육과정에 범죄예방을 위한 범죄학 관련 프로그램 보강 필요
- 범죄신고의 활성화 대책과 통계의 부정확 시정
- 외근경찰에 대한 활동평가를 위한 새로운 기준제시 필요
- 민경친선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상황 수시 점검
- 「범죄예방상담소」를 운영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주택방법장비 설치 요령, 방범진단 등의 실시로 주민에게 봉사